

의안  
번호

696

【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# 검 토 보 고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09. 6. 25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9. 7. 2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09. 7. 8

## 2. 개정이유

- 2008. 3. 21 공포된 건강검진기본법이 2009. 3. 22부터 시행됨에 따라
- 건강검진기관 지정 관련 사무 등이 구청장 관장사무로 신설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신설(별표 1)
  - 건강검진기관지정에 관한 사무
  - ⇒ 건강검진기관의 지정, 청문, 검진기관의 지정취소

## 4. 근거법규

- 건강검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
- 지방자치법 제104조

## 《지방공무원법》

### 【건강검진기본법】

제27조(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밖에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 【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】

제12조(권한의 위임)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
2.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
3.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

### 【지방자치법】

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## 5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09. 6. 2 ~ 6. 21)

#### 6.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검진기관 지정 등의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일부 업무가 시장,군수,구청장에게 권한위임 됨에 따라
-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 하려는 것으로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.
- 다만,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되는 사무를 보면
  - 1.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
  - 2.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
  - 3.법 제17조에 따른 청문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
- 개정조례안 [별표1] 제18호의 검진기관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나목을 보면 “검진기관의 지정취소등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를 법령과 같이 “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			
<p>[별표 1]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</p>		<p>[별표 1]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</p>			
실 과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비 고	실 과	비 고
환 경 위 생 과	<p>1 ~ 17(생략) 18. &lt;신 설</p>			환 경 위 생 과	
				<p>1 ~ 17 (현행과 같음) 18. <u>검진기관지정에 관한</u> 다 음의 사무 가. <u>건강검진기관의 지정</u>  나. <u>검진기관의 지정취소등</u> 다. <u>청 문</u></p>	<p><u>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</u> (<u>동법시행령제2 조</u> 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</p>